「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021. 7.

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의 확대 ·· 1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 4

직업능력정책국

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의 확대
(안 제6조제2항제13호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실업자 등의 직업훈련 지원**

* **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5. (삭 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실업자등
* **시행령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 **대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자***에게 지원

  * 학교의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해석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취·창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이 **다양**해지고 이를 **습득하기 위한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 **지원 대학생**의 **범위**를 **졸업예정자로 제한**하는 것은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 또한, 시행령 제6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생의 범위를 '재학생' 중에서 졸업예정자로 제한**함에 따라

- **취·창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학을 **휴학한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될 소지**가 있음

○ 한편, 시행령 제6조는 **대학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
1. 대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6. 기술대학 / 7. 각종 학교

- 통상 **학년과 상관없이 일이나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이버대학 등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

○ 이에 따라, **청년의 조기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대학생**에 대한 **훈련 지원범위 확대** 필요

□ 개정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생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

- 대학의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와 더불어 ①**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자**(대학 3학년 등)를 지원대상에 포함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21.6.28)

-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②**휴학생**도 지원대상에 명확하게 포함

- 일 및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③**방송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학생**들은 **학년의 구분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생 략)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1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안 제22조제1항제1호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각각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함

> * **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
> *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후 략)

○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는 요건이나,

- 최근 **주52시간제,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多**

  *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 중 약 20%의 평균훈련시간이 4~8시간

- 또한, 최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지속**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현황(개소, 만명): ('18) 23만, 648만명 → ('20년) 12만, 214만명

○ 한편, **대기업**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대기업은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향

  * 300인 이상 사업장 정부 훈련사업 참여(천명): ('17) 2,142(46.2%) → ('20) 630(29.4%)

- 이에 따라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훈련과정**(콘텐츠)이 **중소기업까지 공유·보급되지 않는 문제점**

□ 개정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 완화**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現: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일원화**

-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4시간**으로 **완화**

<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문안>

❹ (사업주 훈련) 기업의 수요 변화, 훈련방식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훈련시간' 단축*('21.1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21.下)
(현행) 2일 이상·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일이상·8시간 이상) →
(개선) 일간 제한 폐지,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 4시간 이상

○ **(시행일)** 2022.1.1.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 ---------- ---------- ----------. 1.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 ---------- ---------- ---------- ----------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2. (생 략) ② ~ ④ (생 략)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